

# 1. 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

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3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4號중 “共同住宅을 管理하는 入住者로 構成된”을 “共同住宅을 관리하기 위하여 入住者에 의하여 구성된”으로 하며, 同條第6號중 “電氣·道路·上下水道”를 “駐車場·管理事務所· 담장·建築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設備”로 한다.

2. “住宅”이라 함은 世帶의 世帶員이 長期間 獨립된 住居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構造로 된 建設物(이에 부속되는 一團의 土地를 포함한다) 또는 建築物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單獨住宅과 共同住宅으로 구분한다.

第3條第7號중 “어린이놀이터, 市場, 醫療施設, 共同沐浴場, 集會所”를 “어린이놀이터·購買施設·醫療施設·住民運動施設·一般沐浴場·入住者集會所”로 하고, 同條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9號중 “市(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市(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로 한다.

8. “幹線施設”이라 함은 道路·上下水道·電氣施設·가스施設·通信施設 및 地域緩房施設등 住宅團地(20)상의 住宅團地를 동시에 開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住宅團地를 말한다)안의 基幹施設과 그 基幹施設을 당해 住宅團地밖에 있는 同種의 基幹施設에連結시키는 施設을 말한다. 이 경우 住宅團地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第1項 本文중 “建設部에”를 “建設部長官에게”로 하고, 同項 但書중 “韓國土地開發公社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組合”을 “韓國土地開發公社 및 地方公企業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事業을 目的으로

하여 設立된 地方公社(이하 “地方公社”라 한다)와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組合”으로 한다.

第6條의3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業者가 住宅을 建設하는 경우에는 建設業法 第33條 내지 第37條·第59條·第61條第2號·第63條·第65條第5號·第66條第3號 및 第6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建設業者”는 이를 “登錄業者”로 본다.

第7條 各號의의 部分중 “6月이내”를 “1年이내”로, “第1號”를 “第1號 및 第7號”로 하고, 同條에 第7號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 第4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證等의 貸與등을 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抹消 및 營業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入住者貯蓄資金중 國民住宅을 供給받고자 하는 者의 貯蓄資金

第10條의3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國民住宅基金의 會計年度·運用計劃 및 決算등에 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基金管理基本法을 適用한다.

第10條의4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9號의2 및 第10號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9. 第38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의 買入과 同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價格 및 貸貸保證金의 支給

9의2. 勤勞者의 住居安定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法律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金融信用保證基金에

## 의出捐

10의2.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化住宅(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住宅에 한한다)의 建設 및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優良住宅資材의 生產第15條第4項중 “利率”을 “종류·利率”로 한다.

第18條第1項중 “國民住宅을 分讓받고자 하는 者”를 “이 法에 의하여 住宅을 供給받고자 하는 者”로 한다.

第20條第1項중 “市長(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市長(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第21條第2項 本文중 “大韓住宅公社 또는 韓國土地開發公社”를 각각 “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開發公社 또는 地方公社”로 한다.

第24條第1項중 “國民住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住宅(이하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으로 하며, 同條第2項중 “國民住宅”을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으로 한다.

第27條第1項중 “大韓住宅公社 또는 指定業者”를 “大韓住宅公社와 指定業者 및 登錄業者”로 하고, 同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 指定業者가 아닌 登錄業者는 資本金·資產評價額 및 住宅建設實績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金融機關 또는 住宅事業共濟組合의 保證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第29條중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業者の 指定이 取消된 때라도”를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業者の 登錄이 抹消되거나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業者の 지정이 取消된 경우에도”로 한다.

第30條 但書중 “指定業者”를 “指定業者 또는 登錄業者”로, “商法 第470條 및 第471條”를 “商法 第470條·第471條 및 第478條第1項”으로 한다.

第32條의2第1項중 “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開發公社”를 “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開發公社 및 地方公社”로 하고, “假道”를 “臨時道路”로 한다.

第32條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2條의3(抵當權 設定등의 제한) ①事業主體는 第33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는 住宅建設事業에 의하여 建設된 住宅 또는 基

地에 대하여는 入住者募集公告후부터 당해 住宅을 供給받는 者가 당해 住宅의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날이후 60日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住宅을 供給받는 者의 同意없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住宅의 建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住宅 또는 基地를 擔保로 提供하기 위하여 당해 住宅 또는 基地에 挑當權 또는 假登記擔保權 등 擔保物權을 設定하는 行위
2. 당해 住宅 또는 基地에 傳賣權·地上權 또는 登記되는 不動產賃借權을 設定하는 行위
3. 당해 住宅 또는 基地를 賣買 또는 贈與등의 方法으로 처분하는 行위

②第1項에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事業主體가 당해 住宅을 供給받는 者에게 통보한 入住可能日을 말한다.

第33條第3項중 “市長 또는 郡守를”을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同條第4項 本文중 “承認”을 “승인·지정”으로, “承認告示”를 “承認告示 또는 承認公告”로 하며, 同項第1號중 “同法 第24條에 의한 都市計劃事業 施行의 許可”를 “同法 第2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의 지정”으로 하며, 同項에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0.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 設置의 認可

第33條第5項 本文중 “決定·承認”을 “決定·승인·지정”으로, “解除·承認”을 “解除·승인·免許”로 하고, 同項第2號중 “水道事業”을 “一般水道事業”으로 하며, 同項에 第7號 및 第8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에 第11項을 다음과 같이 New設한다.

7.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同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8.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域안에서의 行위의 許可 및 同法 第53條의 規

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 面積이하의 農地轉用의 許可

⑪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告示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第33條의2의 題目 “(竣工検査등)”을 “(使用検査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 및 第2項 중 “竣工検査”를 각각 “使用検査”로 하며, 同條第3項 중 “第2項에 의한 竣工検査”를 각각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検査”로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事業主體가 破産등으로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検査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住宅의 施工을 保證한 者 또는 住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使用検査를 받을 수 있다.

第33條의3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事業主體가 住宅建設工事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都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都給하고자 하는 工事의 종류에 따라 관계法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36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 중 “竣工検査日”을 “使用検査日”로 하며, 同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電氣施設·ガス供給施設 또는 地域暖房施設은 당해 地域에 電氣·ガス 또는 暖房을 供給하는 者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幹線施設의 設置費用은 그 設置義務者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第1項第1號의 幹線施設의 設置費用은 그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國家가 이를 補助할 수 있다.

第38條第1項 중 “住民, 使用者와 管理主體”를 “所有者·住民·使用者·住民代表會議 및 管理主體”로 하고, 同條第2項 各號의 부분 중 “住民 및 使用者”를 “所有者·住民·使用者 및 管理主體”로 하며, 同項第3號 중 “破損하는 行爲”를 “破損 또는 毀損하거나 당해 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撤去하는 行爲”로 한다.

第38條第4項 중 “住宅管理事業者”를 “住宅管理業者”로 하고, 同條第5項 중 “共同住宅이 竣工된 때에는”을 “共同住宅의 使用検査를 받은 때에는”으로 하며, 同條第7項 중 “市長 또는 郡守”를 “市長등”으로 하고, 同條第8

項 중 “市長 또는 郡守”를 “市長등”으로 하며, 同條第15項 중 “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를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및 地方公社”로 한다.

第38條의3의 題目 중 “國民住宅”을 “住宅”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 本文·第3項 및 第4項 중 “國民住宅事業主體”를 각각 “事業主體”로, “國民住宅”을 각각 “住宅”으로 하고, 同條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누구든지 事業主體가 建設·供給하는 住宅의 住民者로 選定(一般에게 公開하지 아니하고 分讓하는 住宅組合이 建設하는 住宅 및 社員用住宅의 경우에는 住民者가 決定되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地位(住民者로 選定되어 당해 住宅에 入住할 수 있는 權利·資格·地位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住宅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轉賣(賣買·贈與·賃貸 기타 權利의 变動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抵當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轉賣를 幷旋하여서는 아니되며, 賃貸를 目的으로 建設·供給한 住宅의 住民者로 選定된 地位 또는 住宅은 이를 轉貸(그 權利의 讓渡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轉貸를 幷旋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住宅의 事業主體(第6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體가 建設·供給하는 住宅인 경우에는 市長등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國民住宅은 당해 住宅의 住民者로 選定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2. 國民住宅외의 住宅은 당해 住宅의 住民者로 選定된 날부터 당해 住宅의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날이후 60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事業主體가 당해 住宅에의 入住豫定者에게 통보한 入住可能日을 말한다.

⑤第3項 및 第4項의 경우에 事業主體는 買受人 또는 轉借人에게 住宅價格 또는 賃貸保證金額을 支給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住

宅價格 또는 貸貸保證金을 당해 住宅이 所在한 地域을 관할하는 法院에 供託한 경우에는 당해 住宅에 入住한 者에 대하여 期限을 정하여 退去를 명할 수 있다.

第39條의2第1項 各號의 부분중 “6月이내”를 “1年이내”로, “第1號”를 “第1號 및 第6號의2”로 하고, 同項에 第6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의2. 최근 3년간 2회이상의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者로서 그停止處分을 받은 기간이 通算하여 12月을 초과한 때.

第39條의2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同條第3項 및 第4項으로 하고, 同條第4項(종전의 第3項) 중 “第2項”을 “第3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및 營業의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9條의5 但書中 “第1號”를 “第1號·第4號 및 第5號”로 하고, 同條第4號를 同條第6號로 하며, 同條에 第4號 및 第5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New設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New設한다.

4. 第4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住宅管理士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名義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資格證을 貸與한 때

5. 住宅管理業務와 관련하여 罰金이상의 刑의宣告를 받은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의 取消 및 資格의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9條의6第1項 중 “住宅管理士등”을 “第39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住宅의 管理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住宅管理士등”으로 한다.

第39條의7第1項 중 “自治管理機構·住宅管理業者”를 “入住者代表會議·管理主體”로 한다.

第40條第2項 중 “大韓住宅公社가”를 “大韓住宅公社 또는 地方公社는 그가”로, “市長 또는 郡守”를 “市長등”으로 하고, 同條第3項 前段 중 “市長 또는 郡守는”을 “市長등은”으로 하며, 同項 後段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大韓住宅公社 또는 地方公社는 市長등이 徵收한 금액의 100分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徵收手數料로서 당해 市·郡 또는 區(自治區에 한한다)에 交付하여야 한다.

第41條의2 各號의 부분중 “3月이내”를 “1年이내”로, “第1號”를 “第1號 및 第2號의2”로 하고, 同項에 第2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New設한다.

2의2. 第4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게 하여 住宅資材를 生產하게 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抹消 및 營業의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第1項 중 “市長 또는 郡守의 住宅組合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를 “市長등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住宅組合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4項 중 “市長 또는 郡守”를 “市長등”으로 하고, 同條에 第7項 및 第8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New設한다.

②住宅組合의 設立方法·設立節次 및 住宅組合構成員의 資格基準과 住宅組合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建設部長官 또는 市長등은 住宅供給에 관한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의 規定에 따라 國家가 관리하고 있는 行政電算網등을 이용하여 住宅組合構成員의 資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⑧市長등은 住宅組合 또는 住宅組合의 構成員이 이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住宅組合의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4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5條(工業化住宅의 인정 등) ①建設部長官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住宅을建設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建設業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建設하게 할 수 있다.

1. 主要構造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建設部令이 정하는 性能 및 生產基準에 따라 組立式등 工業化工法에 의하여建設하는 것으로 建設部長官이 인정하는 住宅(이하 “工業化住宅”이라 한다)

2. 建設技術管理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

官이 告示한 새로운 建設技術을 적용하여 建設하는 住宅

②工業化住宅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45條의3 本文중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인정을 받은 優良住宅資材를 生產”을 “工業化住宅 또는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優良住宅資材를 建設 또는 生產”으로 하고, 同條第2號중 “生産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6月이상 生産을 中斷한 때”를 “工業化住宅의 建設을 着工하지 아니하거나 優良住宅資材의 生產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 또는 優良住宅資材의 生產을 6月이상 중단한 때”로 하며, 同條第3號중 “住宅資材를 生產·販賣한 때”를 “工業化住宅을 建設하거나 住宅資材를 生產·販賣한 때”로 한다.

第45條의4의 題目中 “優良住宅資材”를 “工業化住宅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第45條의2에 의한 인정을 받은 優良住宅資材”를 “工業化住宅으로 建設하게 하거나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優良住宅資材”로 하며,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建設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을 갖추고 있는 者가 工業化住宅을 建設하는 경우에는 建築士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設計 및 監理를 요하지 아니한다.

第46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6條(登録證等의 貸與등 금지) 登錄業者·住宅管理業者·住宅管理士等 및 住宅資材生產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施工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免許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7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國民住宅”을 “住宅”으로 하여 同項을 第3項으로 하며, 同條이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여 建設·供給되는 住宅을 供給받거나 供給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證書 또는 地位를 讓渡(賣買·贈與 기타 櫟利의 变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行위를 포함하되, 相繼·抵當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거나 이의 讓渡를 幹旋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入住者 貯蓄證書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償還社債

3.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을 供給받을 수 있는 地位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供給받을 수 있는 證書 또는 地位

②建設部長官 또는 事業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證書 또는 地位를 讓渡한 者에 대하여는 그 住宅供給을 申請할 수 있는 地位를 無效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住宅의 供給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第47條의3 내지 第47條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7條의3(住宅事業者團體의 設立) ①住宅事業의 專門화와 住宅產業의 전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登錄業者는 登錄住宅事業者協會를, 指定業者는 指定住宅事業者協會를 각각 設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住宅事業者協會 및 指定住宅事業者協會(이하 “각 協會”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③각 協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이 法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으로부터 營業의 정지처분을 받은 각 協會 會員의 權利·義務는 그 營業停止期間中 정지되며, 登錄業者の 登錄이 抹消되거나 指定業者の 지정이 取消된 때에는 각 協會 會員의 資格을 잃는다.

第47條의4(協會의 設立認可등) ①각 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登錄住宅事業者協會는 協會의 會員資格이 있는 登錄業者 200人以上, 指定住宅事業者協會는 協會의 會員資格이 있는 指定業者 20人以上이 發起인이 되어 定款을 작성하여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变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47條의5(任員 및 選出方法등) ①각 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理事 및 監事を 둔다.

②會長은 각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하되,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監事는 각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각 協會의 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과 각 協會의 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第47條의6(住宅事業共濟組合의 設立) ①登錄業者는 상호 協同組織을 통한 信用度를 높이고 自律의 經濟活動을 도모하기 위하여 住宅事業에 관한 義務履行에 필요한 각종 保證 및 資金의 融資등을 행하는 住宅事業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組合의 認可節次 및 定款의 기재사항, 任員에 관한 사항, 保證의 대상·手數料 및 出資利子와 組合의 設立·운영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47條의3第2項 및 第3項과 第47條의4의 規定은 組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각 協會”는 이를 “組合”으로 보며, 發起人은 200人以上으로 한다.

第47條의7(事業) ①組合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瑕疵補修保證·損害賠償保證·支給保證·分讓保證 및 기타 保證
  2. 組合員이 시행할 住宅事業運營資金, 기타 住宅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3. 組合員이 住宅事業으로 受領한 어음의 割引
  4. 組合員의 住宅事業用資材의 購買
  5. 組合員의 住宅事業에 관련한 技術의 改善, 教育에 관한 사항
  6. 組合員의 共同利用施設의 설치·운영 및 관리
  7. 組合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관련 事業에의 投資
  8.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委託하는 事業
  9. 第1號 내지 第7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事業
- ②第1項第6號의 施設은 組合員의 利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이를 利用하게 할 수 있다.

第47條의8(出資 및 組合員의 責任) ①組合의 出資金은 組合員이 出資한 總出資座의 額面總額으로 한다.

②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出資證券을 발행하여 出資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③1組合員이 出資할 수 있는 座數는 總出資座數의 100分의 8을 초과할 수 없다.

④組合員의 出資는 全額 現金으로 納入하여야 하며 그 納入金은 組合에 대한 債權과 相計하지 못한다.

⑤出資 1座의 金額 기타 出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⑥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持分額 限度로 한다.

第47條의9(民法規定의 準用) 각 協會와 組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7條의10(각 協會 및 組合의 지도·監督) 각 協會와 組合은 建設部長官의 지도·監督을 받는다.

第47條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協會나 組合이 아닌 者는 登錄住宅事業者協會·指定住宅事業者協會·住宅事業共濟組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48條중 “市長·郡守는”을 “市長등은”으로, “管理主體”를 “入住者代表會議·管理主體”로 한다.

第48條의2 本文중 “第41條의2”를 “第41條의2·第44條第8項”으로 한다.

第49條第1項중 “市長·郡守는”을 “市長등은”으로 한다.

第50條第2項중 “市長·郡守·區廳長”을 “市長등”으로 한다.

第51條 本文중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를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第2號의3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分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그 이익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로 하고, 同條에 第2號의3·第2號의4 및 第4號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 附 則

2의3.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住宅을 建設·供給  
한 者

2의4. 第32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1項各  
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4의2. 第38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入住者三  
選定된 地位 또는 住宅을 轉賣 또는 轉貸하거나  
나 이의 轉賣 또는 轉貸를 幹旋한 者

6. 第4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證書 또는 地位를 讓渡  
하거나 이의 讓渡를 幹旋한 者

第52條第1項 本文중 “500萬원이하”를 “1千萬원이하”로  
하고, 同項第1號 및 第6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第7條·第39條의2·第39條의5 및 第41條의2의 規定에 위  
반하여 營業停止 또는 資格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

6.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查를 받지 아니  
하거나, 檢查에 不合格된 住宅資材를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한 者

第52條第1項에 第6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項  
第7號를 刪除하며, 同項第8號중 “第39條의6”을 “第39  
條의7”로 하고, 同項에 第10號 및 第11號를 각각 다음  
과 같이 新設한다.

6의2. 第4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道知事의 破棄 또는  
收去命令을 위반한 者

10. 第4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證등의 貸與등을  
한 者

11.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中止등의 命令을 위반  
한 者

第52條第2項을 刪除한다.

第52條의2 本文중 “100萬원이하”를 “1千萬원이하”로  
하고, 同條第2號중 “許可”를 “認可”로 하며, 同條第3號  
를 刪除한다.

第52條의3第1項 本文중 “50萬원이하”를 “500萬원이하”  
로 하고, 同項에 第3號 대지 第5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共同住宅을 관리  
한 者

4. 第38條第1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瑕疵補修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47條의11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3年 3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抵當權 設定의 제한에 관한 適用例) 第32條의3  
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어 建設·供給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第3條(다른 法律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適用例) 第33  
條第4項 및 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  
로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第4條(幹線施設의 設置에 관한 適用例) 第36條第1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第3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어 住宅  
을 建設하거나 基地를 造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第5條(住宅의 轉賣등에 관한 適用例) 第38條의3의 改  
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第33條第1項의 規定  
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어 建設·供給하는 住  
宅등부터 적용한다.

第6條(社團法人 韓國中小住宅事業者協會 및 社團法人  
韓國住宅事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의 社團法人 韓國中小住宅事業者協會는 社員總  
會의 議決에 의하여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될 登錄住宅事業者協會가 承繼하도록  
建設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住宅事業協會는  
社員總會의 議決에 의하여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  
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될 指定住宅事業者協會가 承  
繼하도록 建設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③社團法人 韓國中小住宅事業者協會 및 社團法人 韓  
國住宅事業協會(이하 “住宅事業者協會”라 한다)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  
을 얻은 때에는 이 法에 의한 각 協會의 設立과 동  
시에 民法中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  
구하고 각각 解散된 것으로 보고, 住宅事業者協會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각 協會가 각각 承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각 協會에 承繼될 財產의

價額은 각 協會의 設立登記日 前日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消防法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8條第1項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规定에 의한 使用検査”로 한다.

②建設共濟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规定에 의한 竣工検査權者”를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规定에 의한 使用検査權者”로 한다.

③韓國土地開發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3號중 “竣工検査”를 “使用検査”로 한다.

④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을 削除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住宅建設促進法의 规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规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规定에 遵守하여 이 法의 해당 规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適用例) 附則 第7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宅地開發促進法 第8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의 승인을 얻는 分부터 적용한다.

###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第3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號와 같다.	第3條(用語의 定義) ..... .....
1. (생 語)	1. (現行과 같음)
2. “住宅”이라 함은 住居의 用에 供하여지 는 建築物(이에 附屬되는 一團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2. “住宅”이라 함은 世帶의 世帶員이 長期間 獨립된 住居生활을 영위할 수 있는 構造로 된 建築物(이에 부속되는 一團의

으로 區分한다.

土地를 포함한다) 또 는 建築物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單獨住宅과 共同住宅으로 구분한다.

3. (生 語)

4. “管理主體”라 함은 共同住宅을 管理하는 入住者로 構成된 自治管理機構·住宅管理業者 및 事業主體를 말한다.

5-5의2. (生 語)

6. “附帶施設”이라 함은 電氣·道路·上下水道 기타 이에 準하는 것 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 또는 設備를 말한다.

7. “福利施設”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 市場, 醫療施設, 共同沐浴湯, 集會所 기타 居住者の 生活福利를 위하여 需要한 共同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幹線施設”이라 함은 住宅團地내의 基幹이 되는 附帶施設과 그 附帶施設을 당해 住宅團地밖에 있는 同種의 基幹施設에 連結시키는 施設을 말한다.

3. (現行과 같음)

4. .....  
共同住宅을 관리하기 위하여 入住者에 의하여 구성된 .....

5-5의2. (現行과 같음)

6. .....  
駐車場·管理事務所· 담장·建築法 第2條 第3號의 规定에 의한 建築設備 .....

7. .....  
어린이놀이터·購買施設·醫療施設·住民運動施設·一般沐浴場· 入住者集會所 .....

8. .....  
道路·上下水道·電氣施設·ガス施設·通信施設 및 地域緩房施設등 住宅團地(2이상의 住宅團地를 동시에 開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住宅團地를 말한다) 안의 基幹施設과 그 基幹施設 .....



가 다음 각號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 을 抹消하거나 6月이내 의 期间을 정하여 營業 의 정지를 命할 수 있 다. 다만, 第1號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 을 抹消하여야 한다. 1~6. (생 략) (新 設)	..... ..... 1年이내의 ..... ..... 第1號 및 第7號 ..... ..... 1~6. (現行과 같음) 7. 第46條의 規定에 위 반하여 登錄證等의 貸與등을 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抹消 및 營業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 은 大統領令으로 정한 다.	準用한다. 第10條의 4(國民住宅基金 의 運用制限) ①國民 住宅基金은 다음 각號 의 用途외로는 이를 運 用할 수 없다. 1~8. (생 략) 9. 第38條의 3에 의한 國民住宅의 買入	管理基本法을 適用한다. 第10條의 4(國民住宅基金 의 運用制限) ①..... ..... ..... ..... 1~8. (現行과 같음) 9. 第38條의 3第2項의 規 定에 의한 住宅의 買入 입과 同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 한 住宅價格 및 貸貸 保證金의 支給 9의2. 勤勞者의 住居安定 과목돈마련지원에 관 한法律 第13條第3項 의 規定에 의한 住宅 金融信用保證基金에 의 出捐 10. (생 략) (新 設)
第10條(國民住宅基金의 設 置등) ①(생 략) ②第1項에 의한 國民住 宅基金은 다음 각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3. (생 략) 4. 第18條에 의하여 國 民住宅을 分讓받고자 하는 者의 貯蓄資金	第10條(國民住宅基金의 設 置등) ①(現行과 같음) ②..... ..... 1~3. (現行과 같음) 4. 第18條의 規定에 의 한 入住者 貯蓄資金 중 國民住宅을 供給 받고자 하는 者의 貯 蓄資金	10. (생 략) (新 設)	10. (現行과 같음) 10의2. 第45條의 規定 에 의한 工業化住宅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住宅에 한한다)의 建設 및 第45條의 2의 規定 에 의한 優良住宅資 材의 生產
5~7. (생 략) ③(생 략)	5~7. (現行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1. (생 략) ②(생 략)	11. (現行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第10條의 3(國民住宅基金 의 運用·管理) ①~④ (생 략) ⑤國民住宅基金의 會計 年度는 政府의 會計年 度에 따르며 그 運用計 劃·決算등에 관하여는 豫算會計法 第89條를	第10條의 3(國民住宅基金 의 運用·管理) ①~④ (現行과 같음) ⑤國民住宅基金의 會計 年度·運用計劃 및 決算 등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基金	第15條(國民住宅債券의 發 行등) ①~③(생 략) ④國民住宅債券 및 國 民住宅基金債券의 利率 ·發行의 方法·節次 및 償還과 發行事務取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第15條(國民住宅債券의 發 行등) ①~③(現行과 같음) ④..... 종류·利率 ..... ..... .....

각각 大統領令으로 정 한다.	.....	韓住宅公社 또는 韓國 土地開發公社가 事業을 施行하기 곤란한 顯著한 事由가 있고 당해 아파트開發事業의 施行을 遲延시키는 것이 公益上 중대한 支障을 招來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業者중에서 事業施行者를 指定할 수 있다.	韓住宅公社·韓國土地開發公社 또는 地方公社가 事業을 施行하기 곤란한 顯著한 事由가 있고 당해 아파트開發事業의 施行을 遲延시키는 것이 公益上 중대한 支障을 招來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業者중에서 事業施行者를 指定할 수 있다.
(5) (생 략)	(5) (現行과 같음)	.....	.....
第18條(入住者貯蓄등)	第18條(入住者貯蓄등)	.....	.....
①國民住宅을 分讓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미리 入住金의 全部 또는一部를 貯蓄(이하 “入住者貯蓄”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①이 法에 의하여 住宅을 供給받고자 하는 者	.....	.....
(2) (생 략)	(2) (現行과 같음)	.....	.....
第20條(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의樹立) ①市長(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郡守는 都市計劃法에 의한 아파트地區의 指定이 있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地區開發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地區開發計劃”이라 한다)을樹立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本計劃의樹立) ①市長(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	.....	.....
(2) (생 략)	(2) (現行과 같음)	.....	.....
第21條(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施行者) ①(생 략)	第21條(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施行者) ①(現行과 같음)	.....	.....
②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韓國土地開發公社中에서 事業施行者를 指定할 수 있으며 國家·地方自治團體·大	②.....	.....	.....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住宅의 建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한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住宅이 建設될 地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를 거쳐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
1. 당해 住宅 또는 基地를 擔保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住宅 또는 基地에 抵當權 또는 假登記擔保權等 擔保物權을 設定하는 행위	④事業主體가 第1項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號의 許可·認可·決定·承認 또는 申告를 받은 것으로 보며, 事業計劃의 承認告示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號의 관계法律에 의한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2. 당해 住宅 또는 基地에 傳賣權·地上權 또는 登記되는 不動產質借權을 設定하는 행위	.....	.....
3. 당해 住宅 또는 基地를 買賣 또는 贈與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1. 都市計劃法 第4條 및 第5條第2項에 의한 許可, 同法 第12條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同法 第2條第1項第1號 나目 및 다目에 관한 都市計劃의 決定에 한한다), 同法 第24條에 의한 都市計劃事業 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	1. .....
②第1項에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事業主體가 당해 住宅을 供給받는 者에게 통보한 入住可能日을 말한다.	.....	.....
第33條(事業計劃의 承認 및 建築許可 등) ①·②(생 략) ③事業主體(國家·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開發公社을 제외한다)가 第1項의 規定에 의	2~9. (생 략) <新設> .....	2~9. (現行과 같음)
第33條(事業計劃의 承認 및 建築許可 등) ①·②(現行과 같음) ③.....	10.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 設置의 認可 .....	.....
.....	⑤國民住宅事業主體가 第1項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第4項 각號에 의한	⑤.....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를 他人에게 轉賣(賣買  
·贈與·貸貸 기타 權利  
의 變動을 수반하는 일  
체의 行爲를 포함하여,  
相續·抵當의 경우를 제  
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貸貸를 目的  
으로 建設·供給한 國民  
住宅은 他人에게 이를  
轉貸(그 權利의 讓渡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  
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  
해 國民住宅事業主體(第  
6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體가 建設·  
供給한 國民住宅인 경우  
에는 市長·郡守의 同意  
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住宅의 경우에는 入住者가 決定되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地位(入住者로 選定되어 당해 住宅에 入住할 수 있는 權利·資格·地位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住宅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轉賣(賣買·贈與·貨貸) 기타 權利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抵當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轉賣를 幡旋하여서는 아니 되며, 貨貸를 目的으로 建設·供給한 住宅의 入住者로 選定된 地位 또는 住宅은 이를 轉貸(그 權利의 讓渡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轉貸를 幡旋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住宅의 事業主體(第6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體가 建設·供給하는 住宅인 경우에는 市長 등을 말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國民住宅事業主體는  
第1項 但書의 轉賣同意  
를 얻기 위한 入住者の  
申請이 있은 때에는 당  
해 國民住宅을 他人에  
優先하여 買入할 수 있  
다. 이 경우 買入價格은  
다음 各號의 金額을 合  
算한 金額에서 大統領  
령으로 정하는 減價償  
却費를 공제한 金額으  
로 한다.

1~3. (생 략)

③ 第1項에 違反하여 轉  
賣가 있은 경우 그 買  
受人에게 國民住宅事業  
主體가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金額을 合算한  
金額에서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減價償却費 및  
修繕費의 合計額을 공  
제한 金額을 支給한 때

된 날부터 5年の 限  
위내에서 大統領令  
이 정하는 기간  
· 國民住宅의 住宅은  
당해 住宅의 入住者  
로 選定된 날부터 당  
해 住宅의 所有權移  
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날이후 60日까  
지의 기간. 이 경우  
“所有權移轉登記를 申  
請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事業主體가 당  
해 住宅에의 入住豫  
定者에게 통보한 入  
住可能日을 말한다.

## ②國民住宅事業主體是

第1項 但書의 轉賣同意  
를 얻기 위한 入住者の  
申請이 있는 때에는 당  
해 國民住宅을 他人에  
優先하여 買入할 수 있  
다. 이 경우 買入價格은  
다음 各號의 金額을 合  
算한 金額에서 大統領  
령으로 정하는 減價償  
却費를 공제한 金額으  
로 한다.

### 1~3. (생략)

③ 第1項에 違反하여 轉賣가 있은 경우 그買受人에게 國民住宅事業主體가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金額을 合算한 金額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減價償却費 및 修繕費의 合計額을 공

## ②事業主體.....





	<p>인정되는 경우에는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法律의 規定에 따라 國家가 관리하고 있는 行政電算網등을 이용하여 住宅組合構成員의 資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p>
<p>〈新設〉</p>	<p>⑧市長등은 住宅組合 또는 住宅組合의 構成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住宅組合의 設立認可를 取消 할 수 있다.</p>
<p>第45條(示範住宅의 建設). 建設部長은 住宅資材의 開發이나 施工技術의 改良 기타 建築費用의 顯著한 節減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工法을 開發하고 이를 널리 普及시킬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建設業法</p>	<p>第45條(工業化住宅等의 인정등) ①建設部長官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住宅을 建設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建設業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建設하게 할 수 있다.</p>
<p>第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示範住宅를 建設하게 할 수 있다.</p>	<p>1. 主要構造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建設部 습이 정하는 性能 및 生產基準에 따라 組立式등 工業化工法에 의하여 建設하는 것으로 建設部長官이 인정하는 住宅(이하 “工業化住宅”이라 한다)</p>
	<p>2. 建設技術管理法 第</p>

<p><b>18條의 規定에 의하</b></p> <p>여 建設部長官이 告</p> <p>示한 세로운 建設技 術을 적용하여 建設 하는 住宅</p> <p><b>②工业化的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b></p> <p><b>第45條의3(인정의 取消)</b></p> <p>建設部長官은 <b>第45條의 2의 規定에 의한 인정</b> 을 받은 優良住宅資材 를 生產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cancel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賦)</li> <li>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터 1年이내에 生產 을 開始하지 아니하 거나 6月이상 生產 을 中斷한 때</li> <li>3. 인정을 받은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住宅資材를 生產·販 賣한 때</li> </ol> <p><b>第45條의4(優良住宅資材 에 의한 住宅의 建設 等) ①建設部長官은 事業主體에 대하여 그 가 建設할 住宅을 <b>第45 條의2에 의한 인정을 받은 優良住宅資材를</b></b></p>	<p>사용하여 建設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p> <p><b>②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資材生產業의 登錄</b> 을 한 者 중 建設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한 技術者를 보유한 者가</p> <p><b>第45條의2의 規定에 의 한 인정을 받은 優良住 宅資材를 사용하여 組 立式工法設計에 의한 住宅을 建設하는 경우 에는 建築士法 第4條第 1項의 規定에 의한 建 築士의 設計 및 監理를 요하지 아니한다.</b></p> <p><b>&lt;新 設&gt;</b></p> <p><b>第46條(登錄證等의 貸與 등 금지)</b> 登錄業者·住 宅管理業者·住宅管理士 등 및 住宅資材生產業 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 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이 法에서 정 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 행 또는 施工하게 하거 나 그 登錄證·免許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하 여서는 아니된다.</p> <p><b>第47條(供給秩序攪亂 금 지) ① 누구든지 詐偽</b>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하여 建設· 供給되는 住宅을 供給 하게 하거나 供給받을 수 없다.</p> <p><b>第47條(供給秩序攪亂 금 지) ① 누구든지 이 法 에 의하여 建設·供給되 는 住宅을 供給받거나 供給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號의 1에 해당 하는 證書 또는 地位를 讓渡(賣買·贈與 기타) 權利의 变动을 수반하</b></p>
--	--

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하되, 相續·抵當의 경우  
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거나 이  
의 讓渡를 轉讓하여서  
는 아니된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  
한 入住者 貯蓄證書
2. 第27條의 規定에 의  
한 住宅償還社債
3. 第44條의 規定에 의  
하여 住宅을 供給받  
을 수 있는 地位
4. 기타 大統領令이 정  
하는 住宅을 供給받  
을 수 있는 證書 또  
는 地位

②建設部長官 또는 事  
業主體는 第1項의 規定  
에 위반하여 證書 또는  
地位를 讓渡한 者에 대  
하여는 그 住宅供給을  
申請할 수 있는 地位를  
無效로 하거나 이미 체  
결된 住宅의 供給契約  
을 取消할 수 있다.

②第1項에 違反하여 國  
民住宅을 供給받은 者  
에 대하여는 第38條의 3  
第3項 내지 第5項을 準  
用한다.

〈新 設〉

第47條의 3(住宅事業者團  
體의 設立) ①住宅事  
業의 專門化와 住宅產  
業의 전전한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登錄業  
者는 登錄住宅事業者協  
會를, 指定業者는 指定

住宅事業者協會를 각각  
設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住宅事業者協會 및  
指定住宅事業者協會(이  
하 “각 協會”라 한다)  
는法人으로 한다.

③각 協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이 法에 의하여 建設  
部長官으로부터 營業의  
정지처분을 받은 각 協  
會 會員의 權利·義務는  
그 營業停止期間中 정  
지되며, 登錄業者의 登  
錄이 抹消되거나 指定  
業者의 지정이 取消된  
때에는 각 協會 會員의  
資格을 잃는다.

第47條의 4(協會의 設立認  
可 등) ①각 協會를 設  
立하고자 할 때에는 登  
錄住宅事業者協會는 協  
會의 會員資格이 있는  
登錄業者 200人以上, 指  
定住宅事業者協會는 協  
會의 會員資格이 있는  
指定業者 20人以上이 上  
起人이 되어 定款을 工  
성하여 創立總會의 議決  
을 거친 후 建設部長官  
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变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②建設部長官은 第1項  
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  
여야 한다.

〈新 設〉

**第47條의5(任員 및 選出方法等)**

①각 協會에 는 任員으로서 會長·理 事 및 監事を 둔다.

②會長은 각 協會의 總 會에서 選出하되, 建設 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監事는 각 協會의 總 會에서 選出한다.

④각 協會의 任員의 定 員·任期 및 選出方法과 각 協會의 업무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協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第47條의6(住宅事業共濟組合의 設立)**

①登錄業 者는 상호 協同組織을 통한 信用度를 높이고自律的인 經濟活動을 도모하기 위하여 住宅事業에 관한 義務履行에 필요한 각종 保證 및 資金의 融資등을 행하는 住宅事業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組合의 認可節次 및 定款의 기재사항, 任員에 관한 사항, 保證의 대상·手數料 및 出資利子와 組合의 設立·운영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47條의3第2項 및 第3項과 第47條의4의 規定은

〈新 設〉

組合에 관하여 이를 準用 한다. 이 경우 “각 協會”는 이를 “組合”으로 보면, 發起人은 200人以上으로 한다.

**第47條의7(事業)**

①組合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 瑕疵補修保證·損害賠償保證·支給保證·分讓保證 및 기타保證
- 組合員이 시행할 住宅事業運營資金, 기타 住宅事業에 필요 한 資金의 融資
- 組合員이 住宅事業으로受領한 어음의 割引
- 組合員의 住宅事業用 資材의 購買
- 組合員의 住宅事業에 관련한 技術의 改善, 教育에 관한 사항
- 組合員의 共同利用施設의 설치·운영 및 관리
- 組合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관련事業에의 投資
-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委託하는 事業
- 第1號 내지 第7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事業
- 第1項第6號의 施設은組合員의 利用에 지장이 없는 범안안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이를 利用하게 할 수 있다.

〈新設〉	<p><b>第47條의8(出資 및 組合員의 責任)</b></p> <p>①組合의 出資金은 組合員이 出資한 總出資座의 額面總額으로 한다.</p> <p>②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出資證券을 발행하여 出資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p> <p>③1組合員이 出資할 수 있는 座數는 總出資座數의 100分의 8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組合員의 出資는 全額 現金으로 納入하여야 하며 그 納入金은 組合에 대한 債權과 相計하지 못한다.</p> <p>⑤出資 1座의 金額 기타 出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p> <p>⑥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持分額 限度로 한다.</p>	<p><b>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b></p> <p><b>第48條(監督) 建設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事業主體·管理主體 또는 住宅資材生產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處分에 위반한 경우에는 工事의 중지 기타 필요한措置를 命할 수 있다.</b></p> <p><b>第48條의2(聽聞) 建設部長官은 第7條·第9條·第39條의2·第39條의5·第41條의2 및 第45條의3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處分을 받을 者에 대하여 미리 聽聞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利害關係人 기타 參考人の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聽聞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p> <p><b>第49條(報告·検査 등) ① 建設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承認 또는 免許를 받았거나 登錄을 한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出入하여 필요한 檢查를 하게 할 수 있다.</b></p> <p><b>②(생략)</b></p>
〈新設〉	<p><b>第47條의9(民法規定의 準用)</b></p> <p>각 協會와 組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b>第49條(報告·検査 등) ①</b></p> <p><b>建設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承認 또는 免許를 받았거나 登錄을 한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出入하여 필요한 檢查를 하게 할 수 있다.</b></p>
〈新設〉	<p><b>第47條의10(각 協會 및 組合의 지도·監督)</b></p> <p>각 協會와 組合은 建設部長官의 지도·監督을 받는다.</p>	<p><b>第49條(報告·検査 등) ①</b></p> <p><b>建設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承認 또는 免許를 받았거나 登錄을 한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出入하여 필요한 檢查를 하게 할 수 있다.</b></p>
〈新設〉	<p><b>第47條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b></p> <p>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協會나 組合이 아닌 者는 登錄 住宅事業者協會·指定住宅事業者協會·住宅事業共濟組合 또는 이와 유</p>	<p><b>第49條(報告·検査 등) ①</b></p> <p><b>建設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承認 또는 免許를 받았거나 登錄을 한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出入하여 필요한 檢查를 하게 할 수 있다.</b></p> <p><b>②(現行과 같음)</b></p>



8. 第39條의6 또는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檢査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者	8. 第39條의7 ..... ..... ..... ..... .....	裝備를 갖추지 아니하고 管理行爲를 한 者	..... ..... ....
9. (생 략) (新 設)	9. (現行과 같음)	3. 第39條의5의 規定에 의한 資格停止期間중에 住宅管理士등의 業務를 행한 者	〈削 除〉
11. 第4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證等의 貸與등을 한 者	10.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中止등의 명령을 위반한 者	第52條의3(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 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52條의3(過怠料) ① .... ..... 500萬 원이하 .....
②第38條의3第1項에 違反하여 國民住宅을 轉賣 또는 轉貸한 者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2條의2(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削 除〉  第52條의2(罰金) ..... ..... ... 1千萬원이하의 .....	1.~2. (생 략) (新 設)	1.~2. (現行과 같음)  3.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共同住宅을 관리한 者
1. (생 략) 2. 第38條第8項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技術人力 또는	1. (現行과 같음) 2. ..... .....	4. 第38條第1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瑕疵補修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47條의11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②~⑤ (생 략)  ②~⑤ (現行과 같음)

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